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5. 3. 3.

총무재무 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2월 24일 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2월 24일

다. 상정일자 : 제27회의회(임시회) 제3차위원회('95. 3. 3.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세무1과장 문 열 승.

가. 제출이유

대한민국안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결혼에 따른 영문국제결혼증명서 발급사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령 및 도시계획변경·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중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 및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영문국제결혼증명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1건당 3,300원의 수수료 징수항목 신설(안 제3조관련, 별표1, 바, (6))

○ 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징수항목 삭제(안 제3조관련, 별표1, 사, (1))
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에 근거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본 조례중 징수항목 삭제

○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징수항목 삭제(안 제3조관련, 별표 2, 나, (11))

-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('94. 1. 7.)으로 수수료징수항목 폐지에 따른 조치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박관수)

○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시청 시민과에서 발급하고 있던 국제결혼증명 발급사무가 '95. 2. 1부터 관할구청으로 이관되어 혼인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구수입증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,

○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수수료 징수 항목이 폐지 삭제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확인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도 동 규칙으로 가능하게 되어 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 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38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2. 24.  
제 출 자 : 마 포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간의 결혼에 따른 영문국제결혼증명서 발급사무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을 신설하고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령 및 도시계획법령·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본 조례중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 및 도시계획확인원발급수수료 징수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영문국제결혼증명발급 및 재발급에 따른 1건당 3,300원의 수수료 징수항목 신설(안 제3조관련, 별표, 1, 바, (6))
- 나. 도시계획확인원 수수료징수항목 삭제(안 제3조관련, 별표, 1, 사, (1))
  -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에 근거한 수수료 징수가 가능한 기관위임사무이므로 본 조례중 징수항목 삭제
- 다. 사회단체 변경등록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항목 삭제(안 제3조관련, 별표, 2, 나, (11))
  -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('94.1.7.)으로 수수료징수항목 폐지에 따른 조치임

3. 개정근거

- 섭의사법(1962.1.15. 법률제966호)제15조
- 호적법(1990.12.31. 법률제4298호)제25조
-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(1994.1.7. 법률제4736호)
-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시행령(1994.3.2.

대통령령제14183호)

- 도시계획법시행규칙(1993.12.31. 건설부령제541호)제11조의3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(1994.8.17. 건설부령제563호)제2조의14
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필요성 : 불필요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별표>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. 계중 명확인발급사항(38종)의 바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관한증명란중 (5)부양사실증명란 다음에 "(6)영문국제결혼증명발급 및 재발급"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종 목	단 위	수수료액	비 고
(6)영문국제결혼증명 및 재발급	1건(매)	3,300원	

<별표>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. 계중 명확인발급사항(38종의) 사. 도시계획 및 지적에관한 사항란중 "(1)도시계획확인원"란을 삭제하고 "(2)내지(5)"을 "(1)내지(4)"로 한다.

<별표>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"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29종)"을 "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28종)"으로 하고, 동호 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란중 "(11)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"란을 삭제 하고 "(12)내지(17)"을 "(11)내지(16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(별표)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38종)				(별표)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.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(38종)			
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	종 목	단위	수수료액	비고
가. -마. (생략)				가. -마. (현행과 같음)			
바. 주소,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(1)-(5)(생략)  (신 설)				바. (현행과 같음) (1)-(5)(현행과 같음) (6)영문국제결혼 증명발급  (매)	1건	3,300원	
사. 도시계획 및 지적 에 관한 사항 (1)도시계획확인원 (2)-(5)(생략)	1필지	750원		사. (현행과 같음) (삭 제) (1)-(4) : 현행(2)-(5)와 같음			
아.-타. (생략)				아.-타.(현행과 같음)			
2. 각종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29종)				2. 인·허가 및 신고사항(28종)			
가. (생략)				가. (현행과 같음)			
나. 신고·신청에 관한 사항 (1)-(10) (생략)  (11)사회단체변경 등록신청  (12)-(17) (생략)	1건	2,000원		나. (현행과 같음)  (1)-(10)(현행과 같음)  (삭 제)  (11)-(16) : 현행 (12)-(17)과 같음			